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81 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김영환・민형배・이정문

박용갑 • 서미화 • 전현희

정일영 · 김현정 · 임광현

이병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, 외환, 반란,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, 외환, 반란,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. 최근 12·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.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.

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.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(안 제65조제4항

등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"제132조까지의 규정을"을 "제132조까지를"로 한다.

제45조제4항 중 "제3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제48조제5항 중 "제3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재직 중의 사유로"를 "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"로 한다.

제73조제2항 중 "제7항까지의 규정을"을 "제7항까지를"로 한다. 제79조제5항 중 "제132조까지의 규정을"을 "제132조까지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	제1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제) 공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	제)
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	<u>제132조까지를</u>
<u>정을</u>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	
로 본다.	.
제45조(분할연금 수급권자 등) ①	제45조(분할연금 수급권자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④ <u>제3항까지에</u>
<u>정에</u>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, 혼	
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	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	·.
제48조(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)	제48조(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⑤ <u>제3항까지에</u>
<u>정에</u>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	
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
정한다.	<u>.</u>
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	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
제한) ① ~ ③ (생 략)	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	④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
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	사람이

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73조(퇴직수당부담금) ① (생략)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 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,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 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,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 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

<u>.</u>
제73조(퇴직수당부담금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제7항까지를